

Ⅳ - 2	제 목	공사업 양도 ·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	
회신일자	2007-08-21	회신방법	지경부 전자민원
질 의 요 지			
○ 전기공사업자(양도자 : 개인,주민번호로 등록됨)가 법인(양수자 : 법인등기됨)에게 양수양도 하였을 경우, 양도자의 모든 지위가 양수자에게 승계가 되는지, 아니면 일부만 승계되는지 여부 및 모든 지위가 승계된다면,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?			
회 신 내 용			
○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,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,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동법령상의 시공능력이 이전됩니다. ○ 이와 달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즉,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이전되며,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. ○ 지위승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당해 행정관청인 시 · 도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.			